



## [ 샐리치 ] 정 보 공 개 서

(주)코리아푸드ING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 (주) 코 리 아 푸 디 NG

####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수정일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532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11.1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25.

#### [ 샐리치 ] 가맹사업본부 [ (주)코리아푸드ING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로 54-14		
전화번호	1688-7833	팩스번호	031-953-8866
홈페이지	www.koreafooding.com	담당자 이메일	koreafooding@naver.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1. 가맹본부 소개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중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코리아푸드링			
사 용 브 랜 드	샐리치 외 3			
주 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로 54-14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09.24	2009.10.01.	이규운	1688-7833	031-953-8866
법인등록번호	284911-0081859	사업자등록번호	141-81-16914	

##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이규운	샐리치 외 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로 54-14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 09. 24. ~ 현재		이규운	1688-7833	031-953-8866
관 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서동호	샐리치 외 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로 54-14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03.07.~현재		이규운	1688-7833	031-953-8866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주)코리아푸드링]가 다른 기업(지푸라기동태한마리)의 [지푸라기동태한마리] 가맹사업을 인수함	지푸라기 동태 한마리	지푸라기 동태한마리	2023.03.17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134, 1층(금촌동)	서동호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샐리치	
상 호	샐리치 _____ 점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출원번호(일자) : 4020210188346(2021.09.10)
그 밖의 영업표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간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6,651,789	2,405,913	4,245,875	5,077,432	213,023	367,935
2022	6,581,027	2,173,703	4,407,324	4,703,474	241	161,448
2023	6,566,063	2,051,829	4,514,234	4,081,218	170,341	120,910

(2)당사의 최근 3년간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관련	이규운	대표이사	2009.09.24. ~ 현재	(주)코리아푸드링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관련	서동호	이사	2023.03.07.~현재	(주)코리아푸드링 이사	지푸라기 동태한마리 가맹사업 총괄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 (명)		직원수 (명)
	상근	비상근	
2023년12월31일	2	-	1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코리아푸드링	가맹사업 경영	2009.8.10~현재	돈통마늘보쌈(등록번호:20090100366)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을 경영중
가맹본부	(주)코리아푸드링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삼땡날(등록번호:20215330)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준비중
가맹본부	(주)코리아푸드링	가맹사업 경영	2023.03.17.~현재	지푸라기동태한마리(등록번호:20230185)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중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출원일	출원번호	출원인	존속기간만료일
	서비스표	2021.09.10	4020210188346	(주)코리아푸드링	-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출원중) 또한,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현재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 『샐리치』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코리아푸드	샐리치	이규운	가맹사업개시 예정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로 54-14

3. 『샐리치』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샐리치	기타외식	샐러드 및 샌드위치 전문점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가맹점수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샐리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6,469	 (비공)	-	
광고		(비공개)	16,469	 (비공)	-	
판촉						

11. 가맹금 예치

예치기관의 상호 및 담당부서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문산지점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8	031-954-58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IBK기업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내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IBK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IBK기업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셀리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 : 개시지급금, 예약금,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금임차료, 설비구입대금 등 명칭이 어디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다.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VAT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예외조건
[ 합계 ]	9,900				
가맹비	5,5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	가맹점 모집 시 비용소요 및 영업허락대가	공사전계약해지시 정산 후 반환
교육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	교육 비용으로 비용소요	교육전 해지시
개점홍보비	1,1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	광고 비용으로 비용소요	광고전 해지시

####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 환 조 건
[ 합계 ]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물품 및 로열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해지 및 종료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단위:천원/VAT포함)
[ 합계 ]	11,900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개점홍보비	1,100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sup>2</sup> 당 금액	지급 기한	비 고 33m <sup>2</sup> (10평)기준
합계		53,900	5,390		
인테리어	미정	22,000	2,200	시공 시작일까지	
간판	미정	4,400	440	시공 시작일까지	
주방기기 및 기물	미정	27,500	2,750	시공 시작일까지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항,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공사 : 철거, 냉난방, 덕트 외부입상, 화장실, 가스, 후드제작, 외장공사, 전기증설, 소방, 어닝, 의탁자 별도 외)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① 인테리어, 간판, 및 주방설비/집기.비품, 광고홍보, POS SYSTEM 등 당사가 정하는 내역을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시공 및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② 관리감독비 :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의 승인 하에 귀하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감독하고, 이의 비용으로 귀하는 당사에 관리감독비 금삼백삼십만원(₩3,300,000)<부가세 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그 밖의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시청, 인터넷 사용 등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 정 기 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 →분석 및 결과 타당성 자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에 따른 최종 결정은 반드시 귀하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권리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이거나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VAT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월카드 매출의 3.3%	익월10일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금액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총광고금액의 50%중 가맹점사업자 부담분	명세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간 균분하여 부담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정	해당 없음				
지연이자	당사	년12%	연체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현금성 채무 연체 시

※ 위 내역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해당 없음 : 당사는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감독하지 않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행 조 건
1. 귀하와 당사는 당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가맹계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당사에 대한 물품대금, 대여금 및 기타 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당사로부터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 교체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귀하의 비용으로 보수, 교체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당사의 운영시스템이나 디자인 등의 변경으로 영업표지 및 인테리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귀하의 비용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운영하는 『샐리치』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처분일 [ 2 ]개월 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당사와 귀하의 잔여계약기간으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의 경우 개점을 위한 교육 이수 및 개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그에 따른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해지 및 종료 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귀하는 계약 만료 및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 및 철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기한 내에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일십만원(₩100,000)<부가세 없음>을 당사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샐리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p><b>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b></p>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샐리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샐리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샐리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샐리치 그린 샐러드 등	왼쪽에 기재된 메뉴내에서 판매가능	1차 : 구두경고	
햄치츠 샌드위치 등			
샐리치 세트			
커피		2차 : 서면경고	
드링크			
드레싱 추가			
		3차 : 물품공급 중단 후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책임 : 물품공급의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권장 가격(단위 :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샐리치 그린 샐러드 등	6,300~	홈페이지 또는 공문 등	2023년12월기준
햄치츠 샌드위치 등	4,800~		
샐리치 세트	19,600~		

커피	3,800~		
드링크	3,500~		
드레싱 추가	5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샐리치』	해당사항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영업의 범위 및 방법·변경 가능성과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사유
영업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별첨	귀하의 동의 시	상권 변화(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고객 선호 변화, 경쟁 영업표지 입점의 사유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예상매출액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예상매출액보다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 ① 당사는 점포소재지에 대한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이를 도면으로 표시하여 별도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귀하의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합니다.
- ②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귀하의 가맹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본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권 변화(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고객 선호 변화, 경쟁 영업표지 입점의 사유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 예상매출액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예상매출액보다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동의하에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본부가 일부 상품 및 원부재료로 유통사업을 할 경우 해당 유통망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당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본사 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샐리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 가맹사업 경영사실이 없어,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가맹사업 경영사실이 없어,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샐리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만 [ 2 ]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은 만 [ 2 ]년씩 갱신합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와 귀하는 각각 가맹점 개점 이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하여 합의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 반 해 지 사 유
1. 귀하에게 물품공급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한 경우.
2. 귀하가 당사와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귀하가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 이하의 물품 및 원부재료를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경우
4. 귀하가 당사의 서면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5. 당사 또는 귀하가 기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계약서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9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수정 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계약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은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사업자 적격성 기준 및 가맹점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양도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승인통지후 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당사 (TEL: 1688-7833)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교육비, 보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교육비등이 완납 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	승인에 관한 절차는

	가능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양도절차에 준용한다.가맹비는 면제하고 교육은 이수하여야 한다.
대리행사	불가능	-	-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승낙 없이 귀하(직계가족을 포함합니다)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귀하가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 샐러드 및 샌드위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① 당사는 귀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 일수	비 고
오전 10:00 ~ 오후 10:00	365일 연중무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 불가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운영관리팀에 휴업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약 2명	점주 직접 운영	당사 교육이수자	33㎡(10평) 기준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①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 고
현장 청결 (23항목)	담당자 현장 방문 → 인원 및 장비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4주일	당사 운영 관리팀	가맹점 관리표 별첨 [별첨 2]
친절도 (10항목)	담당자 현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4주일		
품질 관리 (7항목)	담당자 현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4주일		

②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맹 본부	가맹점사업자	분 담 절 차	가맹점 사업자간 분담 기준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금액전액	없음	전체 광고 및 판촉계획 공고(행사의 명칭/실시기간/분담비율/분담 한도 등을 제시) → 가맹점의 광고 등 참여 여부 결정(광고의 경우 가맹점 50%이상, 판촉의 경우 가맹점70% 이상 동의)	가맹점사업자가 균분하여 분담
가맹점모집 광고+상품 광고	광고금액 총액의 50%	광고금액 총액의 50%		
상품광고	광고금액 총액의 50%	광고금액 총액의 50%		
판촉	-	-		매출액 비율에 따른

(전국규모)				분담
--------	--	--	--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 중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대해 계약기간은 물론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되며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인쇄, 복사하면 안 됩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계약기간 내 제24조(경업금지의무) 규정 또는 계약기간 내 계약 종료이후 제23조(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금삼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가맹계약서 제32조 제3항)

## 7.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 기간	소요 비용
합 계	약 33㎡(10평) 기준	약 [ 50 ]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50(1일)	비용 없음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D-49(1일)	비용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36~48(13일)	자체비용소요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35(1일)	자체비용소요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34(1일)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고
점포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32~33(2일)	자체 비용 소요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집기비품 등 입고 - 각종 인허가 취득 - 개점 전 교육(공사기간 중 약 2주)	D-2~31(30일)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고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D-1(1일)	자체 비용 소요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 예치가맹금 수령	D-day	자체 비용 소요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전항의 규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귀하에게 계약기간 중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비용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문의: 운영관리팀 (031-953-8799)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관리팀 (031-953-8799)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샐리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샐리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운영, 매뉴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체결 후1개월 이내	필수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교육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개별교육	필수교육

※ 교육일정은 가맹점사업자의 숙련도 및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샐리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	3,3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특별 교육	추후 공지	당사 전액 부담	

※ 교육시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숙련도 및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없음	

[2023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3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2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2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1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1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0년 및 2019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0년 및 2019년 손익계산서-1]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0년 및 2019년 손익계산서-2]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운영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mailto: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koreafooding.com](http://www.koreafooding.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